



##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?

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.



## 연명의료계획서란?

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는 것입니다.

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·등록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은  
우측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 
(www.lst.go.kr)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


의료기관 검색 QR

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 
**연명의료결정법**은

생애 말기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 
본인의 의사를 미리 밝혀두면  
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 
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는  
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이제,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 
미리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.

그리고 그 의사는  
본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 
환자가 되었을 때,  
법적으로 존중받게 됩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궁금하시다면?

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
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-Sustaining Treatment

 1855-0075, 수신자부담 1422-2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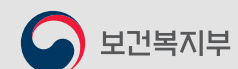
 www.lst.go.kr

“인생의 마지막 순간,  
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”

# 연명의료 결정제도

##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

“인생의 마지막 순간,  
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.”



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
National Agency for Management of Life-Sustaining Treatment



## 연명의료결정제도란?

연명의료결정법(2018. 2. 4. 시행)에 따라  
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 
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 
의학적 기술(연명의료)을  
유보(시행하지 않는 것) 하거나,  
중단(시행하는 것을 멈추는 것)  
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단,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 
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, 물 공급, 산소의 단순 공급은  
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.



##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?
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연명의료,  
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 
사항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.

남양주보건소, 남양주풍양보건소

## 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•



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**보건복지부**가  
지정한 **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**  
**본인이 직접 방문**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

우측 QR코드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

(www.lst.go.kr)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.



등록기관 검색 QR



방문

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
등록기관에 신분증(주민등록증, 면허증, 여권 등)을  
지참하여 방문



상담

등록기관 상담사와 1:1상담 진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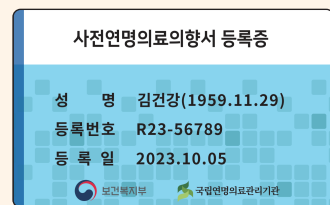
작성

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 
작성



등록 및 보관

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 
등록 및 보관하여 법적 효력 인정



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등록증을 신청하시면  
우편으로 등록증이 발급됩니다.

## 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설명 사항 •

###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 결정

-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, 임종 기간을 연장하는  
**연명의료 시술**(심폐소생술, 혈액 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,  
체외생명유지술, 수혈, 혈압상승제 투여 등)에 대하여  
**유보**(시행하지 않는 것)하거나 **중단**할 수 있습니다.

###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
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**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의향**을 미리  
밝혀둘 수 있습니다.

**호스피스란?** 호스피스 대상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 
포함한 신체적, 심리사회적,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 
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

###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



-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.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라도 환자 상태에 따라 연명의료 등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치료라면 시행되어야 합니다.

###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·등록·보관 및 통보

-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 
등록되어 **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관리**합니다.  
※ 등록기관 직접 방문,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,  
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### 등록기관 폐업/휴업

- 등록기관이 폐업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,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
등의 **모든 기록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이관**됩니다.  
※ 다만 휴업의 경우, 등록기관의 의사에 따라 관련 기록을  
등록기관에서 직접 보관할 수 있습니다.

### 변경 및 철회
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**변경 및 철회**가 가능합니다.  
※ 오프라인, 온라인 모두 철회 가능합니다.

### 가족 열람
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**가족 열람**을 허용한 경우  
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## • 연명의료중단 항목 •



심폐소생술

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 
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

**부작용** 흉부 압박으로 갈비뼈 골절과 혈흉 및 기흉, 기도삽관으로  
치아 손실 및 목소리 손상 등 발생 가능



혈액 투석

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긴 말기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 
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

**부작용** 카테터 삽입으로 인한 혈관 외상, 출혈, 감염 등 발생  
혈액응고제 사용으로 인한 출혈 위험 발생 가능



항암제 투여

암을 축소, 억제,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

**부작용** 항암제가 정상세포를 손상시켜 위장장애, 탈모증 등 발생 가능



인공호흡기 착용

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 
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

**부작용** 기도삽관이나 기관절개술로 인해 치아나 기도 손상, 식도 천공,  
폐하기종 및 출혈 등 발생 가능



체외생명 유지술

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 기능 유지를  
도와주는 치료, 통상적인 전문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자발순환이  
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 
인공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

**부작용** 출혈, 응고 장애, 도관 삽입으로 인한 허혈, 공기색전증,  
혈전색전증 등 발생 가능



수혈

수혈은 정맥에 정맥관(IV)을 삽입하여 혈액을 투여하는 시술로  
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 
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 방법

**부작용** 미열이나 피부발진 또는 체액 과부하 등 발생, 그 외 부적합  
혈액 수혈, 알레르기, 급성 폐 손상,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



혈압상승제 투여

쇼크, 중증 저혈압,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 
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 작용제

**부작용** 지속적인 혈압 상승제 투여 시 사지괴저 등 합병증 유발 가능



기타

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 
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